

# 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

건설환경소방위원회  
수석전문위원 정법주

# 충청북도 조령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검 토 보 고 서

1. 발의자 : 충청북도지사

2. 발의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24년 7월 3일

나. 회부일자 : 2024년 7월 3일

3. 제안이유

임산부를 예우하는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감면 혜택을 신설하고, 숙박 시설의 우선예약 대상자 추가\* 및 주중 이용객에게 결제금액일부를 지역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기준을 마련해 도내 관광진흥 촉진과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한편, 시설사용료 감면 혜택 중복금지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함.

\* 다자녀 가정, 장애인, 산림복지바우처 대상자

4. 주요내용

가. 「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·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(이하 “충청북도 임산부 지원 조례”）」 제2조제1항에 따라 정의 신설(안 제3조제18호)

나.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(이하 “산림휴양법”）」 제21조의5에 따라 우선예약 대상자 추가(제11조제2항)

다. 「산림휴양법」 제21조의5 및 「충청북도 임산부 지원 조례」 제5조제1항

에 따라 “임산부”를 시설사용료 감면 대상자에 추가(안 제12조제1항제 4호)

라.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감면사항이 중복될 경우 유리한 1개 사항만을 적용 신설(안 제12조제2항제3호)

마. 「산림휴양법」 제21조의5 및 「충청북도 관광진흥 조례」 제4조 등에 근거하여 주중\* 이용객에게 숙박금액의 50%를 지역상품권으로 환급하는 기준 신설(안 21조, 별표2)

\* 본 조례 상의 “주중”이란, 성수기 및 법정공휴일의 전날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로 정의함.

## 5. 검토내용

-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 제10조제1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·출산·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, 임산부의 복리증진과 예우를 갖추기 위한 조례 개정이 필요함.
- 또한, 자연휴양림 숙박시설의 주중 이용객에게 숙박금액의 50%를 지역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 마련은 충북지역의 관광산업 촉진과 충청북도의 지속가능한 체류형 관광활성화 발전 모색 및 경쟁력 강화에 도움될 것으로 사료됨.
- 그 밖에 조문 내용은 상위법규에 위반되거나 침해하는 사항이 없으며, 조례안 예고('24. 5. 24.~6. 13.)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함.

## 6. 검토의견

- 본 개정안은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임산부의 복리증진과 사회적 예우를 갖추는 규정 마련과 아울러, 충청북도의 빼어나고 아름다운 산림 자원의 가치를 제고하는데 있어서, 찾고·즐기고·머무는 자연휴양림의 지속가능한 체류형 관광활성화 발전 및 충북 관광진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.
- 다만, 자연휴양림 주중 이용 촉진 및 활성화를 유도하는 지역상품권 환급에는 해당 지역상품권을 우선할지 이용객이 요구하는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할지 등의 투명·공정한 내부기준이 필요할 것임.